

2025년도 주민 주거용 시설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신청서

(앞쪽)

세대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정자 기재(미기재시 등·초본 제출) -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주소(호수까지 모두 기재)	
	상세호수(다가구주택일 경우에만 기재 및 건물 정면 응시 기준 좌우 앞뒤 구분 기재) 건축물대장 기준 층수____층, _____호 (예)지층1호(좌), 지층102호, 1층1호(뒤), 1층203호	

※ 세대주와 지급계좌 예금주가 다를 경우, 위임장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뒤쪽 위임장 참조)

지급계좌	예금주	금융기관명	계좌번호(연금계좌 등 이체 불가)
------	-----	-------	--------------------

※ 세대주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작성란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대리인	성명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주소	
	세대주 확인 (서명 또는 인)	세대주와의 관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공항시설관리자가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세대주 성명 (서명 또는 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서명)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 주거용 시설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세대주 성명 (서명 또는 인)

위 임 장			
[※ 대리신청 또는 세대주 외 타인계좌 지급 희망 시에만 작성]			
위임자 (세대주)	성 명		생년월일(6자리)
	전화번호		주 소
수임자 (피위임자)	성 명		생년월일(6자리)
	전화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위임내용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냉방 시설 전기료 지원 신청 및 타인명의 계좌지급(변경) 위임. ※ 필요 시, 담당직원이 제출된 위임장에 대하여 위임자에게 위임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위임자(세대주) (서명 또는 인)			
위 임 시 구비서류	1. 가족계좌 지급 : 신청서, 위임장, 신분증 사본(위임자), 가족관계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2. 가족 외 타인계좌 : 신청서, 위임장, 신분증 사본(위임자), 위임자 본인명의로 발급된 인감증명서 ※ 위임장 작성이 불가할 경우 최근 1개월 이내 진단서(치매, 의식불명 등) 제출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세대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반드시 정자로 적으십시오.
2. 다가구주택의 경우 독립된 주거 공간인 개별 가구에 전입신고된 단일 세대주를 지원대상으로하며, 하나의 가구에 다수의 세대주가 등록된 경우에는 1세대주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3. 지급계좌는 반드시 입출금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수급자 계좌, 압류방지통장, 연금계좌 등 이체 불가)
※ 지급계좌가 이체 불능계좌일 경우 지급이 불가하오니 이체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세대주 본인 외 타인 계좌 지급 희망 시 위임장 등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상단 “위임 시 구비서류” 참조)
5. 신청접수 후 서류 또는 현장확인(필요시) 등을 통하여 대상 여부를 최종 결정하므로 접수하였더라도 일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부정신청 또는 착오신청(동호수 기재오류 등)으로 지급된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6.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의거 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수집근거
성명, 전화번호, 주소 예금주명, 금융기관, 계좌번호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사업 시행	10년	- 개인정보보호법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
주민등록번호		3년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Q. 미전입자 사업 지원 가능여부
A. 지원대상 : 정부에서 지정·고시한 김포공항 소음대책 지역 내 주거용 시설 전입신고 세대 A. 지원금액 : 6 ~ 9월(4개월) 월 5만원(최대 20만원) - 6 ~ 9월 중 전입기간에 따른 지원금 일할 계산	A. 관련법 상 전기료 지원 시 사업 담당기관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을 확인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10조에 의거 주민등록상 전입신고 세대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Q. 지원금 지급일정	Q. 전기료 지원을 매년 신청해야 하나요?
A. 2025년도 지원금은 2026년 1월말 이후 순차지급 예정이며, 2024년도 이전 과거년도 소급분은 신청일 기준 익월 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A. 본 사업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파기되며, 거주여부 직접 확인 불가로 전년도 신청내용과 변경사항이 없더라도 매년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Q. 비 주거용시설 전입·거주 시 지원가능여부	Q. 세대주가 외국인일 때 이거나 사망 시 제출 서류
A. 관련법에 의거 본 사업대상은 소음대책지역 내 주거용 시설(건축물대장 기준 주택용도) 전입신고 세대입니다. 비주거용시설에 거주할 경우, 건축물대장의 용도를 주거용으로 변경하시면 확인 및 검토 후 지원 가능합니다.	A. 외국인은 거주기간 확인 가능한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등 첨부 (※ 대상년도 10월1일 이후 발급, 체류변경내역 포함) A. 세대주 사망으로 대리신청 시 대상기간(6~9월) 동안의 말소자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사본 첨부